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 남북교류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법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법제심의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법령검토지원팀을 폐지하고, 행정규칙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위법적 행정규칙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지원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령용어순화팀 및 법령검토지원팀”을 “행정규칙심사정비팀 및 법령용어순화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령용어순화팀장 및 법령검토지원팀장”을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및 법령용어순화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제15호로 한다.

11. 정부 내 법령(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별칭조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지원

12. 규제혁신·적극행정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지원

13. 신기술·신산업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지원

14. 법령 검토·지원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연구 등 관련 업무

제9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령검토지원팀장”을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조정
2. 훈령·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관리
3. 규제를 포함한 훈령·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4. 훈령·예규 등의 사전·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5. 훈령·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관리
6.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키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
· 관리
7. 훈령·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운영

별표 1 중 총계 “235”를 “2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4”를 “232”로 하며, 행정사무관 “86”을 “8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35”를 “2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4”를 “232”로 하며, 행정사무관 “85”를 “83”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를 삭제한다.

총리령 제186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행

정규척심사정비팀은 2027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법제지원총괄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법제지원국) ① 법제지원국 에 법제지원총괄과, 자치법제지 원과, 법제교육과, <u>법령용어순 화팀 및 법령검토지원팀</u> 을 둔 다.	제9조(법제지원국) ① ----- ----- ----- <u>행정규칙심 사정비팀 및 법령용어순화팀</u> ---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제지원총괄과장, 자치법제 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 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 고, <u>법령용어순화팀장 및 법령 검토지원팀장</u> 은 서기관 또는 행 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 ----- ----- -- <u>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및 법령용어순화팀장</u> ----- -----.
⑤ 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⑤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u>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 선 업무의 총괄·조정</u>	11. 정부 내 법령(민사·상사· <u>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 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 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 적 쟁점 검토·지원</u>
12. <u>훈령·예규 등에 대한 정비</u>	12. <u>규제혁신·적극행정을 위한</u>

<u>과제의 정비현황 점검 · 관리</u> 13. <u>규제를 포함한 훈령 · 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u> 14. <u>훈령 · 예규 등의 사전 · 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u> 15. <u>훈령 · 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 · 관리</u> 16. <u>훈령 · 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 · 관리</u> 17. <u>훈령 · 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 · 운영</u> 18. (생략) ⑥ ~ ⑧ (생략) ⑨ (생략) ⑩ <u>법령검토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정부 내 법령(민사 · 상사 · 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별칭조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 지원</u>	<u>법적 쟁점 검토 · 지원</u> 13. <u>신기술 · 신산업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 · 지원</u> 14. <u>법령 검토 · 지원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 · 연구 등 관련 업무</u> <삭 제> <삭 제> <삭 제> 15. (현행 제18호와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⑨ <u>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u> 1. <u>훈령 · 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 · 조정</u>
--	--

<u>2. 규제혁신 · 적극행정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 · 지원</u> <u>3. 신기술 · 신산업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 · 지원</u> <u>4. 법령 의견제시에 따른 개선 입법의 발굴 · 연구 등 관련 업무</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2. 훈령 · 예규 등에 대한 정비 과제의 정비현황 점검 · 관리</u> <u>3. 규제를 포함한 훈령 · 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 과의 통보</u> <u>4. 훈령 · 예규 등의 사전 · 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 의 개선</u> <u>5. 훈령 · 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 · 관리</u> <u>6. 훈령 · 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 · 관리</u> <u>7. 훈령 · 예규 등에 관한 규정 의 관리 · 운영</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35</u>		<u>233</u>	-2	
일반직	.		.		.		
계	.		.		.		
			<u>234</u>		<u>232</u>	-2	
행정사무관	.		.		.		
	.		.		.		
			<u>86</u>		<u>84</u>	-2	
	.		.		.		
	.		.		.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35</u>	• <u>233</u>	-2
일반직 계	• <u>234</u>	• <u>232</u>	-2
행정사무관	• <u>85</u>	• <u>83</u>	-2
•	•	•	
•	•	•	